VERTIUM

고양삼송지구 A21BL·A22BL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

www.samsonghoban.com

문의 : 02)358-2200

■시행 : A21블럭 (주)호반주택 / A22블럭 부동산 투자의 대표 한국토지신탁 ■시공 : HO BAN 호반건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자인체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청약 기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고양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학교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입주시점에 삼송택지개발지구 A21블럭 입주민은 신설예정인 삼송3초와 삼송2중에서 수용예정이며 개교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경기도 고양교육청에 문의).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택지중 해당 지구면적 50%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일이 기능한 날로부터 7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아시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변경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www.samsonghoban.com)를 설치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기 앞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시 경우에 따라서 편리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l2you.com), 국민은행 (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 변경 2009년 4월 1일부터 은행의 영업시간 변경(09:30~16:30→09:00~16:00) 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08:30~18:00→08:00~17:30) 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총 2개블럭으로 각각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신청자들의 편리를 위해 통합하여 공고하오니 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A-2블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주택과 -26891 호(2009. 12. 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지구 A-2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2~25층 5개동 총 4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대지면적 25,494.0㎡ 중 아파트 지분 24,319.0㎡, 상가 지분 1,175.0㎡)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총 405세대 중 이주대책 철거민 1세대를 제외한 404세대 [특별공급 52세대 포함(3자녀 특별공급 12세대, 일반 특별공급 40세대]

(단위 : 면적 - ㎡, 금액 - 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층별 구분	공급세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회	2회	중도금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잔금 (입주지정일)	비고 구 주택법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계약시	2010 01.22	2010 05.07	2010 10.07	2011 02.07	2011 06.07	2011 10.07	2012 02.07		
민영주택	22288-01	2009000826 (01)	84.9540	84.9540	27.4930	112.4470	61.0844 (54.1231)	173.5314	60.0430	1층	5	172,767,786	171,792,214	344,56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69,360,000	112.4470
										2층	5	172,767,786	183,092,214	355,86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71,860,000	
										3층	8	172,767,786	194,332,214	367,1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73,500,000	
										기준층	163	172,767,786	201,832,214	374,6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37,400,000	75,400,000	
	22288-02	2009000826 (02)	84.9397	84.9397	27.3997	112.3394	61.0741 (54.1140)	173.4135	60.0329	1층	5	172,738,724	172,411,276	345,15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69,150,000	112.3394
										2층	5	172,738,724	183,611,276	356,35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71,550,000	
										3층	5	172,738,724	194,911,276	367,65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74,050,000	
										기준층	102	172,738,724	202,361,276	375,1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75,100,000	
	22288-03	2009000826 (03)	84.9905	84.9905	28.5151	113.5056	61.1107 (54.1464)	174.6163	60.0688	3층	5	172,842,023	194,857,977	367,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74,100,000	113.5056
										기준층	102	172,842,023	202,387,977	375,23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75,230,000	

※ 상기 표상 공급세대수는 이주대책 철거민1세대을 포함한 세대수임.

■ A-2블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주택과 -26890 호(2009. 12. 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지구 A-2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8~30층 18개동 총 1,4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대지면적 93,483.0㎡ 중 아파트 지분 91,550.0㎡, 상가 지분 1,933.0㎡)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총 1,426세대 중 이주대책 철거민 125세대를 제외한 1,301세대 [특별공급 169세대 포함(3자녀 특별공급 39세대, 일반 특별공급 130세대]

(단위 : 면적 - ㎡, 금액 - 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층별 구분	공급세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회	2회	중도금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잔금 (입주지정일)	비고 구 주택법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계약시	2010 01.22	2010 05.07	2010 10.07	2011 03.07	2011 09.07	2012 01.06	2012 04.06		
민영주택	22289-01	2009000827 (01)	84.9540	84.9540	27.4967	112.4527	68.1199 (63.4193)	180.5726	64.2000	1층	37	187,259,936	171,040,064	358,3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35,800,000	71,900,000	112.4527
										2층	37	187,259,936	183,040,064	370,3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74,300,000	
										3층	37	187,259,936	191,040,064	378,3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75,900,000	
										4~8층	185	187,259,936	202,940,064	390,2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78,200,000	
										9~15층	105	187,259,936	210,950,064	398,21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79,810,000	
										16~30층	181	187,259,936	214,850,064	402,11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80,500,000	
	22289-02	2009000827 (02)	84.9397	84.9397	27.4055	112.3452	68.1084 (63.4086)	180.4536	64.1892	1층	28	187,228,434	169,671,566	356,9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72,100,000	112.3452
										2층	28	187,228,434	181,571,566	368,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74,400,000	
										3층	29	187,228,434	189,481,566	376,71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75,910,000	
										4~8층	145	187,228,434	201,381,566	388,61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38,800,000	78,200,000	
										9~15층	105	187,228,434	209,271,566	396,5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79,700,000	
										16~30층	181	187,228,434	213,281,566	400,51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80,500,000	
	22289-03	2009000827 (03)	84.9905	84.9905	28.5209	113.5114	68.1491 (63.4465)	181.6605	64.2276	1층	3	187,340,440	170,259,560	357,6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72,000,000	113.5114
										2층	3	187,340,440	182,159,560	369,5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36,900,000	74,300,000	
										3층	6	187,340,440	190,059,560	377,4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75,800,000	
										4~8층	30	187,340,440	202,049,560	389,39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78,190,000	
										9~15층	42	187,340,440	209,959,560	397,3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79,700,000	
										16~30층	58	187,340,440	213,923,560	401,27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80,470,000	
	22289-04	2009000827 (04)	84.9713	84.9713	29.0329	114.0042	68.1437 (63.4322)	182.1379	64.2131	1층	4	187,297,855	172,502,145	359,8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72,600,000	114.0042
										2층	4	187,297,855	184,502,145	371,8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75,000,000	
										3층	10	187,297,855	192,542,145	379,84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76,640,000	
										4~8층	50	187,297,855	204,492,145	391,79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78,990,000	
										9~15층	42	187,297,855	212,492,145	399,79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80,590,000	
										16~30층	76	187,297,855	216,392,145	403,69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81,290,000	

※ 상기 표상 공급세대수는 이주대책 철거민125세대을 포함한 세대수임.

※ 공통사항 (A21블럭/A22블럭 공통)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기존 주택형 표기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였음.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1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피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배정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층수는 건축 등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기준 해당금액을 세외한 공정에서는 총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을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김리지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이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당사는 이에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로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 상이 할 수 있음.
- 당 사업지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3%를 특별공급 함.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A21블럭/A22블럭 공통)

1. 이주대책 철거민

- 신청일시 및 장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2항 (이주대책 철거민) : 2009. 12. 7(월) (10:00~16:00) / 당사 견본주택
-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9. 12. 8(화) (10:00)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함.

2. 특별공급

⊙ 공통사항

- 신청일시 및 장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2항 (일반 특별공급) : 2009. 12. 7(월) (10:00~16:00) / 당사 견본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3항 (3자녀 특별공급) : 2009.12. 7(월) (10:00~16:00) / 당사 견본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9. 12. 8(화) (10:00)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함.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이주대책 철거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2항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제39조 제3항에 해당하는 3자녀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계약자는 유의하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최초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 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1)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재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12.1)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2) 3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12.1) 현재 고양시 주택건설지역 및 인천광역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는 하고 있되 해당지역에서의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 포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로서에 거주하고 있는 제대동지대리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수도권 거주자 지역으로 청약 가능.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접은 '전월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하오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 또는 당첨권 지위 승계에 속한 지로 재당첨 제한기간(전매행위 85㎡이하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9.4.1~ 2011.3.31까지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신청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함.

1) 순위별 신청자격 (A21블럭/A22블럭 공통)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특별공급 (일반/3자녀)		• 해당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구비한 분
	1순위	가점제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은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사실 포함)
		추첨제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사실 포함)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됨
	2순위	공통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가점제 대상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추첨제 대상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 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입주자지정에 기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전 주택형	• 2순위 청약자 전원
	3순위	전 주택형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
	2순위	전 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액을 6회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
	3순위	전 주택형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상기 제중명서는 해당 주택형 공급금액의 10% 이상 부담하여 위하여,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준 신청,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2. 일반공급 (A21블럭/A22블럭 공통)

⊙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12.1) 현재 고양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는 하고 있되 해당지역에서의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 포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로서에 거주하고 있는 제이동지대리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수도권 거주자 지역으로 청약 가능.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접은 '전월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하오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 또는 당첨권 지위 승계에 속한 지로 재당첨 제한기간(전매행위 85㎡이하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9.4.1~ 2011.3.31까지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신청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함.

1) 순위별 신청자격 (A21블럭/A22블럭 공통)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특별공급 (일반/3자녀)		• 해당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구비한 분
	1순위	가점제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은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사실 포함)
		추첨제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사실 포함)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됨
	2순위	공통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가점제 대상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추첨제 대상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액을 6회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
	3순위	전 주택형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1) (2) : 주민등록등본에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에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3)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주택형(주거전용면적)		A21블럭 84.9540㎡(A)	A21블럭 84.9397㎡(B)	A21블럭 84.9905㎡(C)	계	A22블럭 84.9540㎡(A)	A22블럭 84.9397㎡(B)	A22블럭 84.9905㎡(C)	A22블럭 84.9713㎡(D)	계
일반특별공급		18	11	11	40	53	47	13	17	130
3자녀 특별공급	경기도	2	2	2	6	8	7	2	3	20
	서울특별시	2	2	1	5	6	6	2	2	16
	인천광역시	1	–	–	1	2	1	–	–	3
합계		23	15	14	52	69	61	17	22	169

4)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사류

구 분		구비사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일반 특별 공급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사우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12.1)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제당 지지해장)의 발급한 장애인인정서만 인정해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기한) • 단독세대 및 배우자분리세대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3자녀 특별 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12.1)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또는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만20세미만 자 포함) 자녀의 가족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무주택서약서(청약신청시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 공급	• 혼인관계 증명서 1통 (만20세 미만에